

도 보

전라남도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016-28호

2016년 6월 13일 (월)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목 차

◆ 조 례

전라남도 조례 제4065호	전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66호	전라남도 보건의료·건강증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67호	전라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68호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69호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70호	전라남도 체육진흥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71호	전라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72호	전라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73호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74호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75호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76호	전라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0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26.)에서 의결된 전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6. 13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65호

전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설치하는 전남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높이고 교육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대학교는 「교육기본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47조에 의한 교육이념과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학교규칙 등) ① 학교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③ 총장은 그 밖의 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4조(총장) ① 대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을 둔다.

② 대학교에는 총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부교수 이상의 교원과 도지사가 추천한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학과장) ① 대학교의 각 학과에는 학과장을 두고, 총장이 임명한다.

②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그 소속 교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6조(교직원) ① 대학교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의 교원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 조교, 지방공무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원, 조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하부조직) 총장은 대학교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장 아래 필요한 하부조직을 두며, 그 직제와 분장사무는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부속기관 등) 총장은 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부속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3장 대학회계

제1절 회계운영

제9조(대학회계) 대학교에는 대학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대학회계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세입) 대학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대학회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나. 전라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
 - 가.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 나. 대학교에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형료
 - 다. 수수료·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 라. 이월금
 - 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바. 이자수입
 - 사. 무형자산 및 도서매각대금
 - 아. 그 밖의 수입

제11조(세출) 대학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대학교의 운영관리비
2. 대학교의 사업비
3. 그 밖의 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2조(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① 대학교는 대학교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대학교는 대학회계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2절 수입금

제14조(대학교수입증지의 발행 등) ① 대학교는 수수료 등의 징수를 위하여 대학교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수입증지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는 “대학교”로, “도지사”는 “총장”으로 본다.

제15조(전형료) ① 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에 소정의 전형료를 내야 한다.

② 전형료와 전형료를 납부하는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입학금 및 수업료) ① 대학교에 입학·재학하는 학생은 소정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학금 및 수업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징수방법, 납부 시기와 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수업료 등 면제)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천재지변 및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해 수업료 등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수수료) ① 총장은 학사에 관한 각종 증명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증지로 징수한다.

② 증명의 종류와 그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공공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제19조(사용료) ① 총장은 대학교의 시설물 중 일부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장학금

제20조(기금설치) 대학교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기금구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대학교의 수업료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내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전라남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4. 외부장학재단·단체·공공기관과 개인의 미지정 장학기탁금

제22조(기금의 용도) ① 조성된 기금의 사용은 재학생의 장학금 지급에만 사용한다.

② 대학교에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위원회를 둔다.

③ 장학금의 지급범위, 대상자 선정, 지급방법, 지급금액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총장은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이율이 가장 높은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총장이 운용관리 하되 “장학기금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한다.

제24조(보고 등) 총장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대상자 추천

제25조(우수졸업생의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대상자 추천) 총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경력경쟁임용 요건을 갖춘 우수한 졸업생을 도지사 및 졸업생의 등록기준지 시장·군수에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제26조(감독 및 승인) 총장은 대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과의 설치 및 폐지
2. 학생 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4. 조교수 이상 교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7조(학과의 설치 및 폐지) ① 총장은 대학교에 학과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전라남도의 산업발전방향과 특성화 전략, 지역의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설치된 학과의 신입생 등록률·전임교원 1인당 신입생 수·재학생 등록률이 다른 학과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하거나, 지속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당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

제28조(지원) 도지사는 대학교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자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대학교 교원의 도정 참여
2. 신입생 입학홍보 지원
3. 재학생 장학지원
4. 졸업생 취업지원

5. 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

제2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위임한다.

1. 하부조직의 교원 보직임용
2. 교직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제7장 보칙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학사행정 관리와 총장 및 교원의 자격기준·임용·보수·신분보장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각종 증명별 수수료표

종 류	수 수 료	비 고
1. 입학증명 2. 합격증명 3. 재학증명 4. 휴학증명 5. 복학증명 6. 재적증명 7. 제적증명 8. 수료(예정)증명 9. 졸업(예정)증명 10. 성적증명 11. 학적부(생활기록부)명 12. 교육비 납부증명 13.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	○ 국문증명 1통당 : 300원 ○ 영문증명 1통당 : 500원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증명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제30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26.)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보건의료·건강증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6. 13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66호

전라남도 보건의료·건강증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보건의료·건강증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 보건의료건강증진심의위원회 조례”를 “전라남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의 내용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도내 보건의료”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2조제1항제4호 중 “도 보건의료시책”을 “지역보건의료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주민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과”를 “다음”으로,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주민대표
2. 학교보건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도 업무담당 국장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국장이”를 “행정부지사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서기는 업무”를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26.)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6. 13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67호

전라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전라남도 홍보대사의 위촉·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전라남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도정 홍보와 도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의회와 협의 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도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정에 관심이 많고 도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관리) ① 대변인은 홍보대사의 위촉과 관리를 총괄한다.

②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발굴, 섭외, 운영하되, 대변인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③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도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④ 대변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 홍보대사 위촉대장을 비치하고 홍보대사가 다양한 도정을 홍보 할 수 있도록 도정 각 분야를 연계한다.
- ⑤ 대변인은 사업주관 부서의 활동실적을 총괄 관리하고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라남도 홍보대사 선정 및 활동실적 관리카드를 작성한다.

제6조(예우 및 활동지원) ①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각종 도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되,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도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품위유지 등) ① 홍보대사는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도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라남도 홍보대사 위촉대상

[illegible]

[별지 제2호서식]

전라남도 홍보대사 선정 및 활동실적 관리카드			
주소또는소속			
직업 및 직위			
성명		생년월일	
위촉기간		연락처	
【주요 경력 및 이력】			
【홍보대사 선정사유】			
【일자별 활동사항】			

제30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26.)에서 의결된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6. 13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68호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이사장이” 를 “대표이사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26.)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6. 13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69호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섬 자원을 보존하고 섬 공동체 활성화 및 관광 여건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섬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2. “섬 가꾸기”란 섬 고유의 생태자원의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기관과 섬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섬 가꾸기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사회적 경제”란 섬 지역의 마을공동체 기반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등 공동체 조직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섬 고유의 유·무형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 소득창출,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섬 가꾸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섬 가꾸기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섬 가꾸기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 가꾸기 추진전략 및 사업계획
2.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3.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섬 가꾸기 계획 수립·변경,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등의 정책방향에 대한 사항을 자문·심의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전라남도 섬 가꾸기 주관부서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생태, 산림·조경, 문화, 관광 등 섬 관련 전문가
2.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섬개발팀장으로 한다.

제7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중간지원조직 운영)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의 효율적인 추진과 섬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의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양성
2. 소득사업 발굴·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3. 섬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군, 마을법인,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섬 관광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간지원조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섬 가꾸기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 사업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시·군과 공무원, 섬 마을, 민간단체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및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0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26.)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체육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6. 13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70호

전라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전라남도의 체육을 진흥하여 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도민의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5.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제1항 각 호의 용어 외에 “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선수”, “경기단체”, “운동경기부” 등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 협의회)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체육 진흥과 스포츠 마케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조직·운영 등은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도민 체육행사를 개최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도민 체육행사를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체육진흥기금) ① 도지사는 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전라남도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전라남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전문체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
8.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① 도지사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표창제도 또는 보상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직장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려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도민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4.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지원
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6. 타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체육 교류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장애인체육 동호인조직) ① 장애인체육 동호인조직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정보센터에 온라인 등록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회원의 수는 장애인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이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동호인조직에는 진행요원 등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도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학교체육의 지원) 도지사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사업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전문체육의 진흥), 제11조(생활체육의 진흥), 제14조(학교체육의 지원)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라남도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2조(장애인체육의 진흥)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전라남도체육회 및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전라남도체육회 및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는 매년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수반하는 규약(또는 정관) 및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사업비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보고·검사 등) 도지사는 체육진흥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에게 그 업무에 대한 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도 체육발전 및 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전라남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②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제30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26.)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6. 13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71호

전라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라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문자 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노인교육의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노인교육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제6조 각 호에 관한 세부 사항
4. 노인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운용 계획
5. 그 밖에 노인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도지사는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2. 노인교육 실시 및 정보 제공
3. 노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파견 사업

4. 노인교육 교재 개발 사업
5. 노인교육에 대한 상담 및 홍보
6.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7.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노인교육지원협의회) ① 도지사는 제5조 제2항의 심의와 노인교육의 체계적인 지원·협력을 위하여 전라남도 노인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도 노인교육 주관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 및 도 교육청 소속 노인교육 관련부서 공무원
2. 노인교육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3. 노인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③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노인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일부를 노인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홍보) 도지사는 노인교육과 관련된 사업 등을 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26.)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6. 13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72호

전라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라남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어업”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 ② “농어촌”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 ③ “귀농어업인”이란 다른 시·도나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도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④ “귀촌인”이란 다른 시·도나 도의 농어촌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도내 농어촌 지역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책에 따라 귀농어업인·귀촌인의 복리증진과 농어업 경영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인·귀촌인은 체계적인 영농어 계획을 수립하고 귀농어·귀촌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도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귀농어업인·귀촌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귀농어

업인·귀촌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 제2항에 관한 사항
2. 귀농어·귀촌 관련 연차별·재원별 투자계획
3. 그 밖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귀촌인, 관련기관·법인·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 시민에게 귀농어·귀촌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역할)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업과 기타 귀농업어인과 귀촌인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8조(사업 지원 및 지원 대상자)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영농어 기술, 농업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3. 주택·농지마련 등 귀농어 준비를 위한 귀농어업인의 집 운영
4. 농어업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등의 융자 지원
5.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에 도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어업인·귀촌인으로 한다.

③ 기타 사업추진 및 신청절차 등은 각각의 사업지침에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중복·편중되거나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귀촌인이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0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26.)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6. 13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73호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 으로 한다 를
”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26.)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6. 13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74호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학교급식”이라 함은”을 ““학교급식”이란”으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학생에 대하여”를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우수농수산물”이라 함은”을 ““우수농수산물”이란”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산물가공 산업육성법”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축산업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를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이상의 축산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은 삭제한다.

제2조제4항 중 ““식재료”라 함은”을 ““식재료”란”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 우수농수산물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제3항 중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을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소요예산 확보, 경비분담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26.)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6. 13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75호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추진과 시행방안
3. 감염병 전문인력 교육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훈련 방안
4. 감염병 발생 통계·정보의 분석 및 정기 환류체계 구축 관리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감염병관리본부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 감염병관리본부」(이하 “관리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리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본부에는 총괄 책임자 1명, 전담 운영자 1명을 두어 관리본부를 운영하고,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며 감염병감시팀, 역학조사팀, 의료감염 및 풍토질환관리팀, 교육홍보팀, 행정팀 등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단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2. 지역 감염병 발생상황 점검 및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3. 지역 풍토병 원인 분석 및 관리 조치 방안 개발
4. 지역 내 의료기관의 의료감염 관리 활동
5. 지역사회 감염병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그 밖에 질병관리본부 및 전라남도 요청사항 등

⑤ 관리본부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도지사는 관리본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보건 및 감염병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본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전라남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라남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 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 방안 및 조달 방안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도민 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역학조사관) ① 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에 따라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② 역학조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2. 관할 지역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중앙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4.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5. 시·군 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제9조(손실 보상) 도지사는 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전라남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협력 체계 구축)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0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26.)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6. 13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76호

전라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을 “자전거보관소“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을 “자전거정비소“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을 “자전거대여소“란”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민”을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반시설”을 “이용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를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함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모든 도민은”을 “도민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군수로 하여금”을 “시장·군수에게”로, “제5조의 규정”을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조에 규정한”을 “영 제4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장·군수로 하여금”을 “시장·군수에게”로,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군수로 하여금”을 “시장·군수에게”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시민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하거나 자전거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 시범직장·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는 때에는 통근·통학로에 대하여 자전거교통안전표지, 안전시설, 자전거횡단도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또는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에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도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고)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 및 지속적인 캠페인을 마련하여 도민에게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및 시·군이 주최·주관하는 체육 행사에서 자전거를 부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 안전모를 함께 지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보험)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지역 또는 기관에 속하는 자전거이용자에게 자전거보험 가입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대상자 및 재정 부담의 비율 등을 정한다.

제16조(자전거의 등록관리) 도지사는 시·군에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 하여야 한다.

제17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 지원)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 등록한 자전거나 도민자전거는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시민단체 · 민간단체 · 동호회 등에 대하여 행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버스, 연안여객선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마일리지 적립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 · 보관소 · 정비소 · 대여소 및 자전거교육장의 관리를 당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시장 ·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활성화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 민간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시설을 조사 · 검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